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서식] <개정 2014.4.17>

# (기 관 명)

문서번호
시 행 일
받 음

제 목 **사후관리이행보증금(사전적립금) 반환 통지**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51조제4항·제5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·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(사전적립금)의 반환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| 예치금액 | 반환결정금액 | 반환금 지급장소(은행 및 계좌번호) |
|---|---|---|
| | | |

붙임: 반환금액 산출근거

**시·도지사**
**유역(지방)환경청장**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 팩스번호( ) 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